

[별첨] 익명신고 처리 판단기준

유형	내용	정보신뢰도	처리기준
<p>제1유형 (신빙성 높은 신고)</p>	<p>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 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 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p> <p>1) 신고서에 근거자료(녹취, 문서 등) 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 또는 참고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3) 사실 확인 및 근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p>	<p>높음</p>	<p>조사 착수</p>
<p>제2유형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p>	<p>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근거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로, 단지 몇 가지의 사실 확인만으로 신고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p>	<p>비교적 높음</p>	<p>근거자료 제출 요청 및 일부사항에 대한 조사 진행</p>
<p>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p>	<p>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ex. ◇◇팀에 근무하는 모차장, ◇◇팀 직원들)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ex. A부장이 계약업체 사장과 자주 만나 접대를 받는다)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ex. 방치한 것으로 보아 담당자가 돈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4) 기타 제1, 제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제1, 제2 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p>	<p>보통</p>	<p>처리 보류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종결)</p>
<p>제4유형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p>	<p>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복신고등 내부제보신고사이트를 통한 신고대상 행위가 아닌 경우</p>	<p>미흡</p>	<p>원칙적으로 즉시 종결 (사인에 따라 관련부서 이첩)</p>
<p>제5유형 (근거 없는 비방, 함담)</p>	<p>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함담, 욕설 등</p>	<p>부적정</p>	<p>즉시 종결, 경고</p>